

17 감사부 보고

제107회기 감사부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부 장 김경환
서 기 황석산

1. 조 직

- 1) 임 원: 부장 김경환, 서기 황석산, 회계 이해중, 총무 홍순율
- 2) 부 원: 정경섭 정영교 박민규 박종의 최동식 변충진 백웅영 최병욱 한진희 한국환 김병수
김상윤 이석관 김종택

2. 회 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2022. 10. 18.(화)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7회 감사부 팀장과 팀원 조직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제107회기 감사부 일정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③ 감사 기간에는 피감부서의 회의 소집 및 행사 진행을 할 수 없음(제107회 예산편성 지침 참조)을 통보하기로 하고, 감사 시 부장 포함 임원 2인이 출석하도록 하다(불참 시 합당한 사유서 제출).
- ④ 감사 및 회의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언론사는 감사 및 회의 예배 시 일괄 촬영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하다.

(2) 제2차 전체회의

☞ 일 시: 2023. 7. 11.(화)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7회 총회 정기감사 배정을 서기에게 위임하고 임원회에 보고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 ② 기독교신문 특별감사 건에 대하여 감사부장이 설명하고, 피감자에 대한 건을 해당 노회에 지도공문을 발송하여 7월 20일(목)까지 보고를 받고, 추후 조치 취하도록 하다.
- ③ 총회세계선교회 특별감사는 7월 24일(월)~25일(화) 총회세계선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감사부 임원, 팀장, 박종의 장로가 감사하기로 하다.



(3) 제3차 전체회의

☞ 일 시: 2023. 8. 30.(수)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7회기 총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유인물대로 보고 받기로 하다.
- ② 잔무를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2)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 일 시: 2023. 2. 23.(목)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7회기 감사 일정 배정표를 확정하고 피감부서에 통보하기로 하다.
- ② 3월 20일(월) 감사 개회 예배 시 각 기관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기관장(국장)이 각 부서 현황을 3분 이내 브리핑하도록 하다.
- ③ GMS 정기(중간) 감사 및 특별감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다.
가. 일 시: 2023년 3월 6일(월) 오전 10시~7일(화)
나. 참석자: 감사부 임원 및 팀장, 박중의 장로
다. 장 소: 총회세계선교회

3)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일 시: 2022. 10. 18.(화) 10: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감사부 팀을 조직하기로 하다.
가. 1팀 팀장 변충진 목사 / 팀원 김상운 목사, 한국환 목사
나. 2팀 팀장 최동식 목사 / 팀원 최병욱 목사, (홍순율 장로)
다. 3팀 팀장 한진희 목사 / 팀원 정영교 목사, 정경섭 목사
라. 4팀 팀장 김종택 목사 / 팀원 이석관 장로, (이해중 장로)
마. 5팀 팀장 박민규 장로 / 팀원 박중의 장로
바. 6팀 팀장 백웅영 장로 / 팀원 김병수 장로
- ② 감사부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다.
가. 기간: 2023년 1월 16일(월)~17일(화)
나. 장소: 호텔 금오산
다. 강사: 총회장 권순웅 목사, 직전감사부장 오광춘 장로, 외부 감사법인, 기타
라. 예산: 총회예산 500만 원 내에서 지출(기타 초과하는 경비는 임원들이 분담하기로 하다)
- ③ 제107회기 감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하다.
가. 중간감사: 2023년 3월 20일(월)~24일(금)
나. 정기감사: 2023년 8월 7일(월)~11일(금)
- ④ GMS 복지법인 특별감사의 건은 총회장님 지시로 진행하기로 하고, 필요 인원만 임원회에서 소집하기로 하다.

- ⑤ 제106회기 선거관리위원회 결산 감사(9월 1일~제107회 총회 마감)는 11월 2일(수) 하기로 하고 제106회기 선관위 임원 2인을 출석하도록 하다.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2022. 12. 15.(목) 15: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감사부 워크숍을 2023년 1월 16일(월)~17일(화),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진행하기로 하다.
- ② 총회세계선교회 특별감사 건은 총회장에게 보고하여 재가받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2023. 3. 20.(월) 10: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지방신학교 감사를 다음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날 짜	학교 (시간)	감사 담당자
4월 12일(수)	서울신학교(11:00), 칼빈대학교(14:00)	김경환, 황석산, 이해중, 최병욱, 김종택, 김상운, 박종익
4월 14일(금)	광신대학교(10:00), 광주신학교(11:30)	김경환, 황석산, 홍순율, 변충진, 박민규, 최동식, 이석관
4월 18일(화)	부산신학교(11:00), 대신대학교(15:00)	김경환, 황석산, 한진희, 김병수, 백용영, 한국환
4월 21일(금)	전북신학교(11:00), 대전신학교(15:00)	김경환, 황석산, 홍순율, 최동식, 박민규, 김상운, 정영교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2023. 4. 12.(수) 10:30

☞ 장 소: 서울신학교

☞ 결의사항

- ① 중간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자구 수정하여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GMS 특별감사 보고서 건은 별첨으로 받기로 하고 총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하다.

(5) 제5차 임원회

☞ 일 시: 2023. 4. 27.(목) 11: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지방신학교(광신대학교 4월 14일) 감사 중 기독교신문사에서 요청한 특별감사 건을 보고받고 기독교신문사 특별감사 건을 총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한 건을 확인하다.
- ② 기독교신문사 태준호 사장, 임종길 총무국장이 출석하여 기독교신문 특별감사 요청 건에 대한 취지를 유인물로 보고하다.
- ③ 기독교신문 특별감사 대상자인 배영국 장로를 5월 12일(금) 오전 11시, 남수원노회장, 서기를 동



일 오후 2시에 출석 요청기로 하다.

- ④ 중간감사 지적사항을 피감부서에 보내기로 하고 시정 및 결과 사항을 7월 7일(금)까지 받기로 하다.
- ⑤ 인천신학교 감사는 5월 15일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부장과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6) 제6차 임원회

☞ 일 시: 2023. 6. 28.(수) 11:00

☞ 장 소: 새로남교회당

☞ 결의사항

- ① 기독교신문 특별감사 건은 기독교신문사와 배영국 장로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최종 입장을 7월 10일(월)까지 문서로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세계선교회 선교사 보험 관련 실무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보고 받다.
- ③ 감사부 전체회의를 7월 11일(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 ④ 총회세계선교회 특별감사를 7월 11일(화)~12일(수) 하기로 하고, 관련자들에게 출석을 요청하기로 하다.
- ⑤ 총회세계선교회 특별감사는 감사부 임원, 팀장 한진희 목사, 변충진 목사, 부원 박종의 장로가 하기로 하다.

(7) 제7차 임원회

☞ 일 시: 2023. 7. 11.(화) 10: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기독교신문 특별감사의 건은 피감사자의 합의 거부로 부결되다.
- ② 기독교신문 특별감사 피감사자 노회에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7월 20일(목)까지 답변을 받기로 하다.
- ③ 총회세계선교회 특별감사는 7월 24일(월)~25일(화) 총회세계선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하다.
- ④ 감사부장 친전으로 보내온 천안중부교회, 염산교회 건은 감사규정 제1장 제2조(감사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반려하기로 하다.

(8) 제8차 임원회

☞ 일 시: 2023. 8. 30.(수) 10: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7회기 정기감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다.
- ② 8월 행사 부서의 미진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다.

제107회 정기감사 지적사항

□ 상비부

1. 정치부

- 1) 정치부가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정 범위를 임원회와 조율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

2. 전도부

- 1) 항상 지원금에 불만이 있었는데 금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요청이 많지 않아 좀 더 많은 지원금이 지원되기도 했고, 형평성과 노회 안배를 더 고려하여 진행할 것.

3. 교육부

- 1) 교육부가 관할하는 기관들의 해외 또는 제주행사가 많은데 행사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업체 선정 시 명확한 입찰기준을 마련하여 편파적으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2) 예산과 지출을 정확히 기재할 것.

4. 헌의부

- 1) 재판국으로 이첩하는 주요 안건은 상세히 기록할 것.
- 2) 서류심사 이유로 지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3) 헌의안을 절차와 법에 따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절차상 하자나 정치적 고려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면밀히 사안을 살펴줄 것)

5. 재정부

- 1) 총회발전기금의 지출 건: 살롬부흥운동본부 총회 예산은 5천만 원이지만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회 발전기금으로 10억 원 추가지급을 결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함(본 발전기금 또는 목적기금은 총회결의 없이는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 총회발전기금(2023. 7월 말, 193억 원 적립) 또는 목적기금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총회 전체 예산 집행 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발전기금에서 단기차입하여 대체 사용하는 것 등을 재정부에 지적하여 검토시정사항을 논의 후 제출토록 함.
- 3) 총회목적기금적립금 중 교역자 최저생활기금은 제101회기 교회자립개발원이 설립되었고, 매년 일정액의 산하기관 총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목적기금으로 더 이상 적립하지 않아도 되고, 은퇴여교역자(독거생계비 지원)기금은 제106회기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제107회 총회결의를 통하여 여교역자쉼터에 7억 원을 지원키로 결의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 됨.
- 4) 분당우리교회 증명서 발급 건(2022.11~2023.8.8. 현재): 교회의 의무사항인 세례교인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제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는데 분당우리교회는 세례교인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 5) 8월에 사용된 지출 부분은 8월 말에 제출하여 추가로 감사받도록 할 것.



6. 면려부

- 1) 역대 면려부장 회의를 진행하며 노회별 면려부 조직을 독려하기로 한 것은 아주 잘 진행된 사업으로 보임.
- 2) 앞으로 노회별 면려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가 필요함.

7. 학생지도부

- 1) 비전트립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수의 노회만 집중적으로 참가하고 다수의 노회가 참가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수 노회가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함.
 - 2) 학지부와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의 업무가 중첩되어 있으므로 학지부와 업무 분담이 모호하기에 학지부에서는 주도적으로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를 지도할 필요가 있음.
 - 3) 재정 집행 내역이 누락된 부분들을 지적함.
 - 4) SCE 활성화 및 전략 세미나를 매년 제주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지도하고 차후 시정되진 않을 시 제재하기로 함.
- * 기타사항: SCE가 해외, 제주 등에서 수련회(비전트립)를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일부 지역만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8. 구제부

- 1) 구제부에서 지급하는 구제금을 형평성 있게 지급하지 않고 있음.
- 2) 각 노회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3) 구제부에서 구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튀르키예시리아 살롬부흥을 위한 TFT 관련).

9. 규칙부

10. 고시부

- 1) 강도사고시 응시생이 현저히 줄고 있는데 고시비는 계속 증가하는 실정임. 전형료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도록 할 것.

11. 농어촌부

- 1) 이천은광교회 후원으로 농어촌교회 쌀 보내기와 식품(곰탕)을 100개 교회에 지원한 일은 매우 값진 일로 더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할 것.
- 2) 추경을 받아 해외수련회(농어촌교회 교역자 위로회)를 진행함에 있어 참가 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교회들이 참석한 사례가 발견됨. 이러한 교회는 차기 수련회부터 참가 금지키로 지도함(차후에 부적합한 교회의 참석 발견 시 책임을 묻기로 함).
- 3) 지역별 균형 있게 참석하도록 세부 규칙 또는 방안을 연구할 것.
- 4) 노회나 총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12. 군선교부

- 1) 총회 군선교사(대대급 교회)에 대한 총회헌법이 개정되었으니 추후 군선교, 한국교회, 청년선교를 위하여 총회 GMS에서 선발, 훈련, 파송하도록 협력하기 바람.
- 2) 총회 군선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선교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

13. 노회록검사부

14. 재판국

- 1) 모든 재판은 서류 및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과 질서에 맞게 판결할 것(화해 조정이 중심되기보다는 판결을 중시해서 재판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봄).
- 2) 상소장, 소원 건은 접수와 동시에 해당 당사자에게 공문 발송할 것(상소·소원에 관한 법문).
- 3) 재판국 판결문 작성을 이유로 제주도 등에서 회의하는 것을 총회 사무실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

15. 출판부

- 1) 신간 제작 시 운영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
 - 2) 도서 재고 및 미수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3) 출판국 매출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함(상비부장을 중심으로 한 임원회에서 기획할 것).
- * 기타사항: 중간감사 시정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 요구됨(서고 축소, 서점 미수금에 대한 대책).

16. 경목부

- 1) 경찰서 방문 시 전문위원 부족으로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음.
- 2) 경찰선교를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도록 할 것.
- 3) 상비부 규정에 없는 조직을 만들지 말 것.

17. 은급부

- 1) 은급부 지역별 찾아가는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요함(제108회기 은급부 운영계획수립 필요).
- 2) 은퇴목사 행사비 확보를 위해 협찬을 요청하여 진행함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후원금 18,300,000원). 총회 차원에서 예산 증액이 요구됨.
예) 노회별 분담금 계획 수립하여 추진도 검토 요함.
- 3) 총회 차원에서의 은퇴목사 복지 정책 장기적 수립이 요구됨.

18. 순교자기념사업부

- 1) 순교자기념사업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예산확보 및 기금 마련 대책이 요구됨.
- 2) 순교자기념사업부 업무 중 순교자 등재 및 행정업무 관련하여 현의안 제출 시, 추진계획 및 방안 수립 계획을 함께 첨부할 것(현재 현의안 공문만 있음).

19. 신학부

- 1) 살롬부흥신학이라는 확실한 개념 설정이 절실하며, 전국에서 5회에 걸쳐 살롬부흥신학 세미나를 개최하여 과다 경비지출로 추경 23,000,000원을 지출함은 시정사항임.
- 2) 결의사항인 대소요리문답서 해설집은 필히 실행되어야 함.
- 3) 세미나 시 지출항목을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
- 4) 회의록을 기록함에 있어 예배(순서자), 회의 종결 시간이 누락 됨.



20. 사회부

- 1) 다문화 초청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제주지역을 매년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어서 지역을 선택할 것(예를 들어 제주지역은 1개 노회인데 호남지역은 30개 노회가 존재하고 있음. 경비 절감이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할 것).
- 2) 장애인 세미나, 한센인지원 부분에서 사회부 임원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체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많은 경비 지출이 발생함. 이를 줄일 것(3박 4일 행사를 전체 참석하는 것을 지양할 것).

□ 상비부 산하 위원회

1. 교정선교위원회

- 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완화된 교정 선교활동이 활성화되었던바, 이단들이 교도소 수감자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아 극렬하게 접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교정선교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할 것.

2. 이만교회운동본부

- 1) 개척교회 지원금 충원 방안을 모색하여 개척교회에 힘이 되는 지원이 되도록 할 것.
- 2) 이만교회운동본부와 총회교회자립개발원과의 사역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상호 보완할 것.

3. 군선교사회

- 1) 군선교 현장 중, 대대급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총회군선교사 51명에 대한 노회 정회원 자격 부여 및 군선교 활동비 일정 금액을 매월 노회에서 지급하도록 총회 차원에서 지시 및 협조가 필요함.

4. 튀르키예-시리아 살롬부흥을 위한 TFT

- 1) 지원액 1,673,941,990원 중 1,556,656,347원을 GMS,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교회봉사단을 통해 현지에 지원, 잔액 117,285,643원을 GMS에 전달하였음을 확인함.
- 2) 상비부서인 구제부가 있으므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기보다 상비부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함이 옳다고 보임.

5. 제주선교센터건축TF팀

- 1) 제주수양관건립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위원회

1. 총회실행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총회 규칙 제11조(위원회) 1. 실행위원회 2) 임무 ①, ②, ③항에 실행위원회에서 추경 결의 및 발전기금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행위원회 회의(2022년 11월 3일)에서 10억 원을 지출하기로 가결한 것은 잘못된 결의임으로 실행위원회가 지출 결의를 하려면 2)항 임무의 내용을 수정해야만 앞으로 실행위원회의 기능이 순기능으로 이루어지리라 봄.

2. 총회임원회

10차 임원회에서 폐지된 충남노회 일체 행정을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되 김OO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어 처리하도록 가결하였다는 것은 한 노회의 전반에 대하여 한사람에게 전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임.

3. 선거관리위원회

- 1) 천서위원회에서 결정된 총대명부를 만들고 투표자 확인 과정을 거쳐 투표를 진행할 것.
- 2) 선거관리위원회가 노회에서 추천받은 출마예정자를 상대로 워크숍을 진행한 것과 선거관리위원 수련회를 진행한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임.
- 3)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회 추천받은 서류만 받기로 되어 있으나 규정에 없는 당회록 자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 1) 타 교단은 전문요원으로 몇 년씩 담당자가 연구하는 반면 우리 교단은 위원장이 1년 임기라 전문성에서 타교단과 비교해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해외 세미나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연간 사업에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 예산 충원 방안도 강구해서 진행할 것.

5. 이슬람대책위원회

- 1)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총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운영방안, 홍보, 문제점 해결, 연구 등을 구분하여 추진)을 운영할 것(해마다 반복하는 사업계획이 아니라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할 것).

6.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장기적 운영을 위해 제108회 총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
(분과 위원회 운영 / 통일정책, 북한지원, 홍보동원 분과 편성 등).

7. 총회역사위원회

- 1) 총회회관 리모델링 후 역사관 이전 시, 자료 보존과 자료 확보에 관심을 기울일 것.
- 2) 사적지 지정 후, 지교회가 사적지 보존에 보다 많은 관심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

8.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 1) 각 행사 시 지출내역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리하여 보고할 것.
- 2) 해외 교류 행사 시에 총회장 및 임원들이 동행할 경우 항공료 등 경비가 과하게 부담되어 시정해야 하며, 총회에서 대표로 2인만 참여할 것.
- 3)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의 업무가 더욱 선명하고 전문성이 필요함.
- 4)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정관 및 매뉴얼에 따라 진행할 것.

9.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 1) 제107회기 총회에서 수입한 내용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본 위원회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총회임원회와 연석회의를 요청한 것이 보류됨으로 인해 ① 성윤리 매뉴얼 ② 검정교과



서 기독교 관련 내용 ③ 포괄적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검토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바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한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할 것.

- 2) 지역별 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 강사 선정은 정치적, 진영논리에 위배 되지 않는 분을 선정할 것.

10.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 1)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와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총회 교육개발원을 통합하여 총회의 미래·다음·교육의 정책을 다루는 전문화된 하나의 기관으로 발전해야 함을 지적함.

11. 총회위기관리대응본부

12. 재개발특별위원회

- 1) 장기적 차원에서 재개발(교회)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술자료 보관 및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13.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 1)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역 개발이 필요함.

14. 세계개혁주의부흥협의회

- 1) 협의회를 구성한 필요성,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된 업무로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짐.

15. 샬롬부흥운동본부

- 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샬롬부흥운동세미나로 100개 노회에서 3,500명 이상 전도일꾼으로 양성하고, 전도의 방향을 제시하며 전도물품을 지원한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
- 2) 그러나 샬롬부흥운동본부 사업이 당초 예산은 회의비 5천만 원만 배정되었으나 과다한 행사를 진행하여 총회예산 6억 원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짐. 만약 샬롬부흥운동본부가 진행된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하였다면 총회 예산편성 때부터 연간 사업에 대하여 협의하고 필요예산이 확보하였다면 목적기금, 발전기금, 추경 등 집행항목의 혼선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목적헌금,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는 매뉴얼에 따라 얼마까지 집행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규칙(지침서) 제정이 필요함.
- 3) 전도물품을 신청한 1,100교회에 배포하여 농어촌교회 전도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여겨지나 행사진행에 있어 홍보, 광고비 지출이 많았고, 전도물품비가 과다하고 여겨짐.

16. 제주수양관건립위원회

- 1) 입찰 규정과 진행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고,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여러 사안을 총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
- 2) 이기풍선교센터, 명성수양관 등이 기독교 수양관이 실패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두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여짐.

17. 기후환경위기대응특별위원회

- 1) 전북제일노회 외 31개 노회 기후환경위기대응세미나 총회 주최는 참가비 무료인데 전문위원 이박행 목사의 단체에서 3만 원씩 참가비를 받아 진행됨(문제의 소지가 있음).
 - 2) 행사가 끝난 후, 총회와 서울시가 기후환경 관련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 이박행 목사가 기후환경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총회장을 패싱하고 진행하였음.
- ※ 문제를 발생시킨 이박행 목사를 전문위원회에서 퇴출.

18. 연·기금제도연구위원회

- 1) 연금 수급자 또는 수혜자가 받을 이익을 비가입자가 부담하게 하는 총대 전원연금 납부는 잘못된 것이므로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장로 총대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 2) 현 제도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느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 3) 연·기금 제도에 대하여 노회를 방문하여 연·기금제도 홍보 및 노회별 연·기금위원회 상설화 권면, 노회별 우수 사례를 알릴 것.
- 4) 외국 국적자 연금가입의 대안이 필요함.

19. 대회제시행연구위원회

- 1) 신문 공고와 제107회기 총대 대상 문자 발송을 하여 공청회를 시행하였으나 공청회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여 추후 총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함.
- 2) 대회제가 시행되려면 전체 총대의 합의를 모아 추진하여야 함. 제107회 결의로 대회제 시행을 전제한 위원회가 세워졌지만, 관심과 연구가 부족함으로 대회제 시행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20. 기독교봉사회이사파송추진위원회

- 1) 추진위원회 참여 저조로 회의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2번 회의, 2명 참석) 차후 관련 부서에 이관하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1. 헌법개정위원회

- 1) 공청회를 3회 개최했던바, 공청회보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이 절실함.

22. 광주동부·서광주노회합병위원회

23. 경상노회분립위원회

- 1) 총회가 42당회가 되지 않는 노회를 허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본 위원회도 여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분립을 불허해야 한다고 봄.
- 2) 분립위원회가 장로고시를 시행하고 합격 통보하여 당회를 구성하게 한 것은 잘못된 것임.
- 3) 추경 350만 원을 청구하여 700여만 원을 회의비로 지출함은 과다 지출한 것임.

24. 수경노회분립위원회

- 1) 은혜롭게 분립하였음.



25. 동한서노회분립위원회

- 1) 분립 청원 시 동한서노회는 조직교회 18개, 미조직교회 21개 청원을 하였으나, 동한서노회는 조직 예정교회 ① 꿈이있는교회(조성복 목사), ② 말씀의숲교회(유동호 목사), ③ 주형상교회(최상용 목사), ④ 뉴사운드교회(천관웅 목사), ⑤ 살롬교회(김주원 목사) 이상 5개 교회가 당회 구성으로 노회 조직 여건이 됨을 확인하다. 다만, 분립 청원 시 여건이 미비 된 경우는 분립을 허락하지 않도록 지도함.
- 2) 추경이 50%이므로 과다한 회의를 지양하도록 지도함.
- 3) 총회에서 분립을 허락하기 전 42당회가 되지 않는 노회를 분립한 것은 문제임.

26. 대외협력위원회

- 1) 대외협력위원회의 비중과 역할, 업무에 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한 활동 제한이 많으므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함.
- 2) 한교총, 한장총 등 연합기관에 분담금을 충실히 납부하고 있음에 반해 실제적인 활동 지분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추후 활동 지분을 확보하도록 지도함.
- 3) 총회총무의 업무가 방대하여 대외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음을 확인하고 대외협력위원회에 업무 분담을 통해서 효율적인 대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함.
- 4)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에게 활동 전문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함.
- 5) 대외협력위원회의 상설이 필요하고 예산 증액, 위원도 추가하여 실제적인 대외업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함.

2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연수)원

- 1) 재정적, 인적 자원이 너무 미약함.

28. 총회빅데이터시스템구축소위원회

- 1)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전반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안정화되지 않아 조속히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완성 시까지 연구 개발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29.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 1)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는 제107회 총회 현장에서 충남노회 폐지를 가결하고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하여 허락된 위원회로 총회가 부여한 권한은 21당회 이상 신설노회를 원할 시 허락하여 진행하는 것과 이명·이적을 도와 진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
- 2) 본 위원회도 초기 주어진 임무에 따라 진행하였지만, 이명·이적을 청원한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신설을 청원한 (가칭)충남제일노회는 정상적인 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서류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하였음이 확인됨.
- 3) 제105회 총회에서 제정 공포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관하여 제4차 임원회에서 총회 시 긴급동의안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5조 적용 청원건”을 기각하였고, 제8차 임원회에서 “충남노회 폐지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음을 보고받았는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근거로 한다면 제14조에 근거하여 패소한 자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제105회 총회에서 제정 공포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15조 3항에 근거로 정기회 측에 정상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총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권한 밖이며 만약 이 법을 근거로 한다면 충남노회 폐지를 가결한 총회결의가 무효이고 따라서 본 위원회가 구성된 것

도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4) 총회임원회 또한 10차 임원회에서 폐지된 충남노회 일체 행정을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되 김OO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어 처리하도록 가결하여 공문을 보낸 것은 한 노회의 전반에 대하여 한사람에게 전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임.
* 충남노회에 관련하여 제108회 총회에서 전체 총대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0. 아시아지역노회신설소위원회

- 1) 회의록에 기록될 내용이 누락 되었음을 지적함(키르기스스탄 방문자 명단 및 내역).
- 2) 예산에 없는 과다한 추경을 사업계획 없이 진행되었음을 지적함.
- 3)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지도함.

31. 미주중부노회복구소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지 않았음.

32. 총회준비위원회

- 1) 제108회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주차장 확보, 휴게공간 문제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등을 당부함.

□ 기관

1. 유지재단

- 1) 전반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총회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요청함(건물, 토지 평가).
① 총회회관, ② 서초구 나대지, ③ 제주수양관부지, ④ 제주신일교회부지, 건물(별첨 등기부등본 참조)
- 2) 예약금 규모는 28억(자본금 20억 포함)임을 확인함.
- 3) 입찰규정,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명백한 규정을 마련할 것.

2. 은급재단

- 1) 자금운용 요령(원칙)에 대한 규칙 제정이 꼭 필요함.
- 2) 기금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수급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반 총대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3. 사회복지재단

4. 기독교신문

- 1) 기독교신문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이사회비 납부율 등)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차기 중간감사부터는 이사회, 서기 회계가 감사에 필히 참석하도록 지도함.
- 2) 기독교신문 제주지사(미계약)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감사부에서 출석시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당사자가 출석에 불응하거나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독교신문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함(감사부 임원회에서 추후 일정을 정하여 제주지사 감사).



- 3) 태준호 사장 부임 이후 23억에 달하던 부채가 5억 7천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기독교신문 문서선교 부흥예배를 37회를 진행하여 전국교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신문사의 공신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칭찬할 만한 부분임.

기타사항: 제105회기 특별감사와 기독교신문 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실 급여가 15% 삭감 되어져 어려움이 있는바 부채 청산이 이루어지면 최우선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 부분을 살피도록 할 것을 권면 함. 또한 기독교신문이 어려운 교회를 직접 지원하고 미래자립교회를 도우며, 연합기관사에 협력한 것과 미디어국을 재가동한 것은 매우 잘한 부분으로 보임.

5. 교회자립개발원

- 1) 교회자립개발원과 이만교회운동본부의 사역이 중복되므로 단일화 필요함.

6. 교육개발원

- 1) 이사들은 총회 규칙 제1장 3조에 따라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
- 2) 규칙상 이사장 임기는 3년이므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교체하도록 해야 할 것.
- 3) 원장 임기가 6년으로 정관에 되어 있는데 총회 어느 기관에서도 임기가 6년이라고 된 부서가 없는데 임기를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고 현재 원장은 총회 직원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정년에 따르고 인사이동으로 바뀔 수 있음.
- 4) 총회교육개발원과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그리고 미래정책개발위원회가 하나의 총회교육·다음·미래를 위한 기관으로 연합될 필요가 있음.

7.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 1) 총회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와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와 총회교육개발원을 통합하여 총회의 미래·다음·교육의 정책을 다루는 전문화된 하나의 기관으로 발전을 해야 할 것임.
- 2) 임원(지역임원 포함) 분담금 과다로 불만이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확보 문제를 고려할 것.
- 3) 다음세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총회장배 전국 유소년풋살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도의 결실이 있게 하며 주일학교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주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나 총회예산보다 참가비 또는 협찬에 의존하여 행사를 진행하였고, 총회장배라기에는 시상 규모가 작아 아쉬움이 있으므로 총회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대회로 발전시켜가기를 바람.

□ 총신대학교

1. 총무시설팀

- 1) 사당캠퍼스 기숙사 노후시설 관련 건축 계획을 수립하여 속히 처리할 것.

2. 기독교교육연구소

- 1) 기독교교육연구소에서 국가 근로 장학금 수령자를 사무실 보조원으로 청원하여 배정한 것은 잘한 일임.

3. 기획혁신팀

- 1) 총회 교육부와 효율적인 업무협업을 통해서 학교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함

(SCE 여름 수련회 등).

- 2) 후원 모금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서 각 교회에 후원 현황 등을 발송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도함.

4. 총신재무회계팀

- 1) 총신대학교 전 지출금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함. 예) 자금 지출 시, 최종 OTP 승인을 팀장이 하고 있음(예금인출 시). 보완을 위해 최소 상급자의 승인 또는 문자전송(예금인출 시) 시스템이 필요함.
 - 2) 방대한 회계 관리를 위해 재무회계팀(2명)으로 부족한 상태임(전문 회계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타사항: 목적자금(약 440억)에 대한 관리가 잘되어있으나 한 은행에 편중되어 있음(옵션 내용 추후 파악).

5. 총신대보사

- 1) 열악한 재정 상황임에도 신문 발간 업무에 최선을 다함을 치하함.
- 2) 논설 칼럼 등의 기사를 게재함으로 독자들이 사고 영역을 넓히도록 노력할 것.
- 3)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지도가 요망됨.

6. 입학인재개발처

- 1) 입학생 모집 관련에서 차후 효과적 차원에서 전략과 전술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
- 2) 장학금은 장기적 지급 방향을 설정하여 연도별 향후 추진계획(목표, 방향)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

7. 교육방송국

- 1) 방송시설(믹서 외) 노후화로 인한 어려움이 확인됨과 동시에 시설(방음시설) 교체와 보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지도함.

8. 대학원 교학 입학팀

- 1) 장학제도 증가시켜 정원을 확보하도록 할 것.
- 2) 홍보를 적극적으로 연구·진행하여 정원이 미달하지 않도록 할 것.
- 3) 특수학과 개발을 위해 정책적 연구를 요함.

9. 개혁신학연구팀

- 1) 중간감사 지적사항인 가칭 개혁신학 학술 포럼은 계속해서 총회 이만교회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요함.
- 2) 유물 훈증을 가치 있게 보존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할 것이며, 총회 역사위원회와도 연계하여 유물 확인 및 보존할 수 있도록 요함.

10. 교회음악연구소

- 1)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2) 연구 프로젝트와 행사를 구분하여 계획 수립 요함.



3) 연구소 기능을 위해 장기적 투자 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이 요구됨(업무 규정 2009년 수정됨).

11. 경건훈련팀

- 1) 개교기념일 체육대회 3,000만 원은 과다 지출되었으므로, 원우회 체육 담당자 관리가 절실함.
- 2) 경건훈련팀에서 학생지도 업무, 장학업무, 복지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살려 직제 개편이 필요함.
- 3) 제107회기 총회인재양성기금 2억 5천만 원에 군중후보생장학금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지원되도록 할 것.

12. 교회선교연구소

- 1)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구소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정 예산 배정하도록 지도함.

13. 부속유치원

- 1) 감사 때마다 지적되어온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도함(시설 보충 예정일, 예산 수립 계획 등).
- 2) 유아용 변기 중 파손된 것이 확인됨과 동시에 노후화가 심함으로 변기 교체할 것을 지도함.

14. 식당

- 1) 가격 인상과 식수 인원 증가로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힘쓸 것.

15. 전산정보팀

- 1) 전산 유지보수 및 전산정보 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 기할 것.
- 2) 수검표에 전산정보팀 예산 및 지출현황을 제출할 것.

16. 교무인사팀

- 1) 교내 학술연구 계획 및 실적 결과 현황을 수립하여 가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현황) 필요(5년, 10년 항목 연도별 건수, 학과별 관리).
- 2) 2024년 연구비 배정을 학과별로 배분. 연구비 계획을 수립 및 실적관리 요구됨(학과별, 건수별, 금액 계획 수립, 실적관리).
- 3) 연구비 지급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평가(논문 수준, 연구)를 통해 구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됨(일괄적으로 100만 원 내 지급됨).

17. 중앙도서관

- 1) 도서관 이용 학생을 늘리기 위해 프로그램(행사, 이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 개선과 서비스에 힘쓸 것.
- 2) 예산 확보하여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18. 법인사무국

- 1) 법인국 수익구조가 열악하여 수익 창출을 이루어야 하는데 양지 캠퍼스 도로 자투리 토지

(교육용 13필지) 중 9필지 토지를 수익용 토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매도할 수 있으니 ① 감정평가 완료 ② 평의회 통과되었기에 총장 동의서를 받아 금년(2023. 12. 31.) 내 실현할 것.

19. 사당평생교육원

- 1) 목회자 대상으로 계획된 새로운 프로그램 ‘설만한 물가’ 등은 총회에서 관심을 갖고 총회장 명의로 수료증을 수여하여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2) 사당평생교육원을 총회에서 관심 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

20. 계약학과팀

- 1) 계약학과팀은 중간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결과 누락으로 수검에 차질을 주었고, 담당 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여 담당자 수검 질의응답이 원활치 못함.
- 2)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계약학과팀에서 홍보에 더 힘을 쓸 것.

21. 산학협력단

- 1) 산학협력단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학교 내 설치할 필요가 있음(학교 내 산업체 유치 운영 시스템 구축).

22. 섬김교목팀

- 1) 실제적인 사업 내역(예배순서 담당자 표가 아닌 실제적인 사업 즉, 예배 후 친교 시간 제공 등) 계획서를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지도함.

□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1. 신학대학원 교무팀

- 1) 홍보(리플렛, 유튜브, 홈페이지) 부분을 더 연구하되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홍보(행사장, 노회 수련회 부스)를 진행하여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

2. 양지시설지원팀

- 1) 지출(전기, 수도료) 부분을 태양광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필요(에스코 사업으로 예산 절감 효과).
- 2) 시설용역비는 정확히 점검 필요.

3. 성지언어연구소

- 1) 반드시 필요한 연구소로 판단 됨.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운영방안 수립이 요구됨.
- 2) 성지언어 연구에 대한 실적 및 평가 결과가 필요함(연도별 인원, 금액 외).

4. 양지생활관

- 1) 노후배관 교체 공사는 예산 절감 차원으로 수질 개선 기계를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체 할 것.



5. 총신원보사

- 1) 예산·지출 결산서 광고 수입 내역이 누락 됨(280호, 281호 광고비 누락, 예산서 계획 및 결산 내역 재보고).
- 2) 총신원보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운영계획, 신문발행 횟수, 기자 양성계획 등).

□ 총회세계선교회

1. 선교부, 선교사역원

- 1) 파송선교사를 교회가 중단했을 때, 교단지인 기독교신문에 광고, 홍보하여 교단 내 교회가 알고, 다른 파송교회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

2. 행정부/ 행정원

- 1) 이사장 및 직원들의 해외출장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사장, 선교총장, 행정총장이 동반하는 출장으로 총대들의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하고 총회가 화상회의를 명문화한 것을 참고하도록 할 것.(22. 10. 31.~23. 7. 21. 기간에 총 17회 해외출장이 있었고 행정총장 9번 해외 출장, 선교총장 7번).
- 2)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별도의 지출결의서와 자금집행결재를 별도로 받아야 함(이사회에서 결재 후, 실무부서가 재정을 집행하여야 함).
- 3) 전체 직원에 대한 급여를 일괄 10% 인상한 것은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해 하급 직원부터 우선 배려해야 옳다고 여겨짐.
- 4) GMS 이사회비 납부가 저조함. 납부 이사 비율 약 37%(납부액 5억 6천만 원 / 금액 확인해야 함), 미납률 63%(미납액 9억 5천만 원). 현재 납부요청은 여직원 공문 발송으로만 진행되고 있음. 적극적인 납부요청이 요구됨.
예) 노회, 지교회 공동 공문 발송 행정총장 책임하에 납부요청 등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됨.
- 5) 공동 기금 규모 13억 원 정도가 선교사 필요 대출로만 사용되고 있음(선교를 위한 적극적인 사용 연구 필요함).
- 6) 현재 급여 지급 인원수가 23명임. 분포는 실제 업무지원 15명, 상위 결제 직원 8명으로 조직의 재검토가 필요함, 결제 상위직원을 줄이고 현장 실제 직원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 7) 법인 카드 사용 시, 사용내역 불투명(반드시 사용영수증뿐 아니라 사용 일시, 사용처, 참가 인원 등 별도 명세서 작성이 필요함).
- 8). 튀르키예-시리아 재난지원금 관련
 - ① 2차 GMS 임원 현장 방문(5명 지출 경비 24,641,070원) 지출 상세 명세서 제출 요청함.
 - ② 현지 선교센터 건립 건 2곳 (2억+3억 = 5억).
- 1차 방문 시 총회장(권순웅 목사) 등 결정으로 집행하기로 하여 1차 2억이 지출되고, 3억은 곧 지출 예정이라고 함.
 - ③ 재난지원금 중 총회에서(총회회계) 제주선교센터 행정비 5,238,800원으로 지출된 부분은 문제가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됨.
 - ④ 현재 GMS에 지원된 총금액은 1,601,653,472원(지출금액 952,075,680원, 잔액 639,577,792원, 적정 사용 여부를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음).
- 9) GMS 선교사 보험 지급 건 2022~2023년에 선정된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임.
- 문제점 ① 입찰 시, 제시 가격이 957,459,550원인데 실제 지출은 1,070,898,890원으로

차액 113,439,340원이 추가 지출됨.

- ②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원인이 된 공문도 없고, 특별한 문서로 된 사항이 없음(특별감사 시, 구두 설명이 아닌 추가 확인이 필요함).
- ③ 서류에 의하지 않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직원 관리가 수직적이어서 경직되어 있음.
- ④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고 여겨짐.
예) 1인 → 600명 선교사 관리

3. 세계선교회 재정

- 1) GMS 연간 수입 중(참고 총예산 35억) 이사회비 입금이 저조하므로 납부율을 올리도록 방안을 연구할 것(이사회비 총 750명 중 338명 정도만 납부함. 약 45% 12억 5천만 원에서 5~6억 정도 입금됨).
- 2) 선교사 안식년 여행비 적립 중에 타부서 차용 내용
 - ① 바울관 건축비용(2005) 15억
 - ② 요양원 건축비용(2008~2009) 6억
 - ③ 일반경상비 건축으로(2011~) 1억 8천 4백만 원 대출 상환 계획이 없음.

4. 훈련원

- 1)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이 잘 준비되어 있음.
 - 2) LMTC 훈련원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함.
- 기타사항: 양질의 강의 운영을 위한 정규강의(12주) 중 특강 순서도 강의에 반영할 것을 요청함.

5. GMS 사회복지 법인

- 1) 요양원 현재 직원 16명(원장 1명, 국장 2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관리인 1명, 요양보호사 9명) 입소자 18명, 주간보호 1명으로 공실이 반 이상이기에 요양원 수익에 차질이 있으므로 차후 대책을 마련할 것.
- 2) 2021년 5월 1일 이월 잔액이 169,555원으로 시작하여 2021년 5월과 6월 운영비가 약 96,000,000원과 연간 일회성 지출해야 할 각종 지출금액 13,000,000원이 누락이 된 상태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요양원 부지(화성시에 증여한 땅)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사회 결의가 적법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제계획도 명확히 세워야 할 것임.

□ 산하 속회

1. 전국주일학교연합회

- 1) 코로나19 이후에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다음세대 회복을 위하여 사역을 진행한 노력이 보임.
- 2) 근속교사 포상 규정을 만들어 명확한 규정을 바탕으로 수상자를 검증하도록 할 것.

2. 전국여전도회연합회

- 1) 각 노회 여전도회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로 전국여전도회연합회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더 연구하도록 지도함.



- 2) 각 노회 여전노회 연합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도록 지도함.
3. 전국남전노회연합회
 - 1) '살롬부흥'을 협력하여 더 효과적으로 부흥 운동을 이루어 단회적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함.
4.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 1) 보고서 임원 조직표에 노회명, 교회명을 기재할 것.
 - 2) CE 사업이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운영되었던바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
 - 3) 선교대회 예산 35,000,000원에 비해 49,400,000원으로 과다 지출되었음.
 - 4) 지역노회 CE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에 필요함.

총회인준지방신학대학교 및 총회인준신학원 감사 보고

1. 감사 기간: 4월 12일~5월 15일

2. 전체현황

- 1) 총회인준지방신학대학교 및 신학대학원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낮은 선호도로 학생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 학교 운영의 재원 중 상당 부분이 노회나 일반 후원에 의존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음.
- 3) 총회인준신학원 대부분은 학생 수급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타교단 여성목사, 정년 연장 등의 문제로 신학원 학생 다수가 이탈하고 있음.
- 4) 총회가 지원하는 장학금(인재양성기금)은 총신대학교에 비하여 다른 학교에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총회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개선을 요청하고 있음.
- 5)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보수교육에 대한 불만이 있고, 각 대학에서 진행되도록, 교육비 부담이 없도록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음.
- 6) 총회나 기타 공식적인 자리에 총신대학교 총장에 대한 배려는 있으나 다른 신학대학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총회 내에 신학대학교 총장 모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

3. 지방 인준 신학대학교 학교 현황

1) 칼빈대학교

- (1) 감사일자: 4월 12일(수)
- (2) 감 사 자: 김경환, 황석산, 이해중, 홍순율, 최병욱, 박종의
- (3) 학사현황: 이사장 임경빈 장로, 총장 황건영 목사(직무대행)
 - ① 학부 587명, 대학원 819명, 신학대학원 152명, 총 1,558명으로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음.
 - ② 전입교원 확보율 64%이며 입학 정원의 외국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학사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음.
 - ③ 신학대학원생에 대하여 100%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장학제도가 잘 준비되어 있음.
- (4) 건의사항
 - ① 신대원 졸업생들의 총신 보수과정을 각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 ② 총회지원금(인재양성기금)이 학교를 통해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 ③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총장회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2) 광신대학교

- (1) 감사일자: 4월 14일(금)
- (2) 감 사 자: 김경환, 황석산, 홍순율, 최동식, 박민규, 이석관
- (3) 학사현황: 이사장 김용대 목사, 총장 김경운 목사
 - ① 대학원 213명(신학대학원 55명), 학부 159명, 총 372명이며 교원확보율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② 장학금 31억을 지급하는 등 장학제도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③ 전체 예산 106억 중 기부 수입이 41억으로 안정적임.



- ④ 학교내 교회에 대한 임대수익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

(4) 건의사항

- ① 지방신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총회에서 지도하여 줄 것을 요청함.
- ② 장학금(인재양성기금)을 총회가 학생에게 바로 지급함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지 않도록 학교를 통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 ③ 충신대학 보수과정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대신대학교

- (1) 감사일자: 4월 18일(화)

- (2) 감 사 자: 김경환, 황석산, 백웅영, 한국환, 김병수

- (3) 학사현황: 이사장 임영식 장로, 총장 최대해 목사

- ① 교원 92명, 재학생 424명으로 학교 운영상황이나 재무 상태가 안정적임.
- ② 타 신학대학에 비하여 입학정원을 100% 채우고 있음.
- ③ 대체로 잘 운영하고 있지만, 신학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④ 기부금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역 노회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4) 건의사항

- ① 총회인준신학대학교들의 총장 모임을 총회가 주관하여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함.
- ② 충신 보수교육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이 있고 최소 교육비라도 면제하여 지방신학교 재학생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4. 총회인준신학원 학교 현황

1) 서울신학교

- (1) 감사일자: 4월 12일(수)

- (2) 감 사 자: 김경환, 황석산, 이해중, 홍순율, 최병욱, 박종익

- (3) 학사현황: 이사장 김대근 목사, 학장 김춘환 목사

- ① 신학과 27명, 여교역과 7명, 목회연구원 8명이며 통신과(교도소 재소자 90명, 중국 154명) 개설하여 운영 중 임.
- ② 학교 건물(130억 원 추산)에 따른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과다하다고 보임.
- ③ 총 수입(9억 8백만 원)중 대부분이 임대수익으로 노회나 장학금 등의 후원이 필요한 상황임.

(4) 건의사항

- ① 탈북신학생 5명이 재학 중으로 총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함.
- ② 학교 건물이 노후되어 개보수비용을 총회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함.

2) 광주신학교

- (1) 감사일자: 4월 14일(금)

- (2) 감 사 자: 김경환, 황석산, 홍순율, 최동식, 박민규, 이석관

- (3) 학사현황: 이사장 배정환 목사, 학장 이형만 목사

- ① 문제점: 신학부 입학 학생 수가 부족함.
- ② 대 안: 여자신학연수과와 사모신학연수과로 운영하고 있음.

③ 재정은 협력 노회의 후원으로 담당하고 있음.

3) 부산신학교

(1) 감사일자: 4월 18일(화)

(2) 감 사 자: 김경환, 황석산, 백웅영, 한국환, 김병수

(3) 학사현황: 이사장 이진철 목사, 학장 임정환 목사

① 부채 없이 학사를 이전하고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학업 분위기가 조성됨.

② 학교 전체운영비의 50% 이상을 지역 노회들이 학교를 위하여 힘써 후원하고 있음.

③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이며 앞으로 평생 교육원이나 평신도 지도자과정 개설 등 효율적인 학사 운영이 되도록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건의사항

① 지방인준신학원 이사장, 학장을 총회 시 인사 할 수 있도록 요청.

② 지방인준신학원 연합 이사장, 학장들과 총회장과의 만남을 필요하여 요청함.

③ 지방인준신학원 연합학생수련회에 총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4) 전북신학교

(1) 감사일자: 4월 21일(금)

(2) 감 사 자: 김경환, 황석산, 홍순율, 최동식, 박민규, 김병수

(3) 학사현황: 이사장 서현수 목사, 학장 백종성 목사

① 학교 건물이나 부지에 비하여 학생 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살롬관(비전센터)을 건축하여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② 남학생 1명, 여학생 5명으로 현재로서는 학사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 있고 대안으로 사모대학(여교역자반 8명) 장로평생교육원(27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5) 대전신학교

(1) 감사일자: 4월 21일(금)

(2) 감 사 자: 김경환, 황석산, 홍순율, 최동식, 박민규, 김병수

(3) 학사현황: 이사장 박춘삼 목사, 학장 소선민 목사

① 총회신학원(재학생 14명)의 운영방안이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② 재학생 20명으로 열악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로평신도대학원(37명) 이단상담과정(25명)을 개설하고 학사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4) 건의사항

① 지난해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옥상과 카페를 원상 복구하는 지원을 총회 임원들이 방문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을 총회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함.

6) 인천신학교

(1) 감사일자: 5월 15일(월)

(2) 감 사 자: 김경환, 황석산

(3) 학사현황: 이사장 김범선 목사

① 신학과 6명, 여교역자과 2명으로 정상적 수업이 어려워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임.



총회세계선교회, 사회복지법인 특별감사 및 조사처리 보고

1. 개요

107회 총회 감사부 보고 시 청원한 GMS 특별감사 청원이 본회에서 허락되었기에 2022년 12월 15일 총회장님의 재가를 받아 감사를 시행하였음.

2. 경과보고

- 1) 2022년 10월 10일, 전체회의 시 특별감사하기로 가결
- 2) 2022년 12월 15일, 총회장 재가받음
- 3) 2023년 2월 17일, GMS 이사장, 사무총장, 총무 담당자 1차 감사
- 4) 2023년 2월 24일, GMS 감사 일정 및 제출서류 준비 통보
- 5) 2023년 3월 6일, GMS 및 사회복지법인 전체 감사
- 6) 2023년 3월 10일, 당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대면

3. 감사내용

- 1) GMS 상호의료기금 중 25억 원이 장기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있음.
- 2) 이에 대해 총회 감사 시마다 선교사들의 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여러 번 지적하였으나 개선책을 찾지 못한 채 지나왔음.
- 3) 상호의료기금 대여금 중 16억 원은 GMS 교회 건축에 사용되었고 9억 원은 사회복지법인에 증여 또는 대여되었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속되고 있음.
 - ① 2005년 11월 9일 GMS복지위원회 결의로 설립되어 진 GMS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2006년 2월 16일 토지 4,417평과 선교사 상호의료기금에서 3억 원을 기증하기로 결의하여 집행하였으나 의료기금을 기증한 것은 문제가 있다(별지 내용 첨부).
기증된 토지와 기금을 자본금으로 2006년 6월 7일 GMS복지재단이 창립되었고 10월 화성시의 허가를 득하였으나,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 2008년 10월 복지재단에서 GMS이사회로 2억 원의 차입을 요청하였고 기금운영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시중금리보다 1% 높은 금리로 대여하기로 결의 후 차용증서를 받고 2억 원 중 복지재단 분담금 1억, 부족운영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별지 내용 첨부).
 - ② 사회복지법인은 화성시 관할로 외부자금 차용 시 반드시 화성시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GMS 차입금에 대해 차입금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후원금으로 처리하였고, GMS 또한 차용증을 받았음에도 담당자가 목적기부금확인서를 발급해 화성시에 제출함으로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도록 업무처리가 되어 있다.
 - ③ 2009년 4월 9일, 11회기 7차 임원회에서 사회복지재단에서 요청한 자금지원 요청 건은 동년 5월 6일, 더 이상 지원이나 차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나 일주일 뒤 다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보전용 3억, 시설 운영 목적으로 1억을 차용증을 받고 추가 차용해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차용증은 없고 출금영수증만 첨부된 상태이며 4억 원 또한 사회복지재단에서는 후원금으로 처리하여 화성시에 보고하고 경비로 지출함으로써 사회복지재단 대차대조표에는 전혀 차용한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 변제의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 ④ 상기의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GMS이사회와 사회복지법인 양 기관을 동일인들이 겸임 또는 이

사장 이임과 동시에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과 재정의 연속성을 띠고 지원한 성향이 많고, 행정력이 따르지 않음인지 의도가 내포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차용증을 받고도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항은 업무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여지며 2억 원의 대여금이 환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4억 원을 대여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 ⑤ 15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본 건에 관련된 서류는 문서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된 부분이 많고 서류발급 또는 자금을 운용한 담당자 대부분 퇴임한 상황이어서 책임 소재를 밝힌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지며 대여금에 대한 보전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4. 대책 및 방안

- 1) 제106회기 감사부가 지적한 사항 중 총회 임원 및 산하기관의 임원 출마자가 납입한 등록금은 각 기관의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GMS만 일반 재정으로 입금하여 경상비로 사용하고 있음은 잘못된 것임으로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장기대여금 충당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함.
- 2) 선교사 후원 목적 외 본부 후원금 중 일부(GMS이사회 자체적으로 비율을 결정하도록 함)를 발전기금에 적립하도록 권고함.
- 3) 총회도 15년 전 발생한 부실자금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선교사 상호의료기금의 투명성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시작하는 발전기금 적립을 위하여 오천만 원 정도 추경을 세워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함.
- 4) GMS본부와 복지법인의 이사장이 겸임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복지법인 운영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비, 경상비, 잡비 등이 GMS에서 지출되고 있음은 잘못되었으므로 복지법인에 대한 지원 및 시설보수 또는 회의비 지출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짐.
- 5) 초기 발생한 재정 문제는 GMS와 요양원이 하나라는 관계성과 불분명한 책임성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생한 사안임으로 GMS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겸임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 6)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요양원의 운영과 인사 및 행정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현재 행정을 관리해야 할 조직이 없으므로 감독할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상임이사를 선임하여 행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5. 결론

- 1) 15년 전 발생한 장기대여금 미환수액에 대하여서 조속히 보전 방안을 시행하도록 할 것.
- 2) 본건이 계속 재론되면 세계선교를 위해 매진하는 선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총회 산하 교회들의 선교 열정을 해치게 할 수 있다고 사료 되므로 이번 감사로 본 사안은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기독신문 경기동강원지사 특별감사 및 조사처리 보고

1. 개요

기독신문사(총회유지재단)가 경기동강원지사 배영국 장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남수원노회 정기회에서는 배영국 장로를 총회장총대, 기독신문이사로 파송하였다.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특별감사 요청으로 2023년 4월 14일 총회장의 재가를 받아 감사를 진행함.

2. 경과보고

- 1) 2023년 4월 14일, 전체회의(온라인)에서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가결, 총회장 재가받음
- 2) 2023년 5월 12일, 부노회장 박인성 목사, 서기 서상원 목사, 최찬용 목사에 대하여 감사 진행
배영국 장로 1차 면담
- 3) 2023년 6월 9일,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요청
- 4) 2023년 6월 29일, 배영국 장로 2차 면담
- 5) 2023년 7월 10일, 기독신문 조치 현황 접수
- 6) 2023년 7월 18일, 배영국 장로 총대 사임 및 남수원노회 총대교체 확인서 제출
- 7) 2023년 8월 9일, 기독신문사와 배영국 장로 합의 조율

3. 감사내용

- 1) 본 건은 기독신문 광고 및 지대비 미정산 건으로 105회기 특별감사에서 경감 조치 후 성실히 변제 의무를 다할 것을 확인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기독신문사와도 수차례 변제를 약속하고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법무법인 소울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2022년 10월 5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2022년 10월 12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채권추심 중에 있는 건으로 총회재산에 대한 손실이 있다고 판결된 건임에도 남수원노회 정기회에서 기독신문사 이사와 총회 총대로 파송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독신문사 특별감사 요청으로 진행된 사항임.
- 2) 이에 대해 총회장님의 재가를 받아 총대 및 기독신문사 이사 파송 경위에 대하여 부노회장, 서기 등 노회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노회는 기독신문사 이사에 대하여 본인의 사임서를 받아 이사교체를 보고하였다고 하였으며 배영국 장로는 그동안 기독신문사와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부인 소유의 빌라를 매각하여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
- 3)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몇 차례 면담을 시행하였으나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노회로 하여금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줄 것을 공문으로 발송하였고, 남수원노회는 7월 18일 총대 교체를 진행하였다고 보고함.
- 4) 8월 7일 감사부장의 중재로 기독신문사와 배영국 장로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

청 원 서

수신: 총회장

참조: 서기

제목: 감사부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감사부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감사부는 독립기관으로 규정되어져 있는데 장자 교단인 우리 총회는 감사부가 상비부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1. 총회임원회를 비롯해 총 53개 부서, 총신대학교 21개, 총신신대원 6개, 세계선교회 4개 부서, 산하 기관 등 모두 100여 개 부서를 단 5일 만에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당해 연도에 발견되지 못한 부분이 다음 해에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현 감사규정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부에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나 형식적인 감사를 받고 지나치려 한다고 해도 감사 기간만 넘기면 감사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큰 금액을 잘못 집행하고 행정적 과오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만 지나면 다시는 감사 할 수 없는 규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3. 정부의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서 감사 기능을 보장받고 있는데 우리 총회는 총회장 지시에 의해서만 특별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총회 임원회나 총회장과 연관된 기관 또는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4. 감사부는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규칙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출마할 수 있고 재판국을 비롯한 모든 상비부가 다시 배정될 수 있음에도 감사부만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감사부가 보다 공의로운 감사를 통하여 총회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을 제104회기 이전으로 개정되어야 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2023년 9월

감 사 부
부 장 김 경 환
서 기 황 석 산